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소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0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28일

발 의 자 : 김소영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경우, 김소양, 황규복
김인호, 박기재, 오한아, 이정인
이호대, 장상기, 전석기, 채유미
최기찬 의원 (13명)

1. 제안 이유

- 화재,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노인,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·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대피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.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함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·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장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(안 제57조제4항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시장은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